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3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6호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□ 개정이유

- 복리후생규정에 있는 직장내의 성희롱 금지 관련 조항(제20조, 제21조, 제22조)이 복리후생규정의 내용과 결이 달라 직장내 성희롱 금지 관련 조항을 인권 관련 내규에 신설하였으므로 복리후생규정에서는 삭제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직장내의 성희롱 금지 관련 조항 전부 삭제

- 개정규정안 : 별첨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직장내 성희롱 금지)

제20조 전부 삭제

제21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)

제21조 전부 삭제

제22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)

제22조 전부 삭제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황 기 성 (390-7606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0조(직장내 성희롱 금지) 사장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20조(직장내 성희롱 금지) <전부 삭제></p>	
<p>제21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) ① 사장은 직장내 4대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을 예방하고,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4대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직장내에서 4대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 사장은 직장내에서 4대폭력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21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) <전부 삭제></p>	
<p>제22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) 직장내 4대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4대폭력에 관한 법령 2.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공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. 4대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. 기타 4대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22조(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) <전부 삭제></p>	